규제 준수 분석 통합 보고서

생성일: 2025년 10월 22일

1. 사업 정보

항목	내용
업종	배터리 제조
제품명	리튬이온 배터리
원자재	리튬, 코발트, 니켈, 흑연
제조 공정	원자재 혼합, 전극 제조, 셀 조립, 충방전 테스트
직원 수	50명
판매 방식	B2B, 온라인

2. 분석 요약

2.1 규제 현황

• 총 규제 개수: 4개

• 우선순위 분포:

• HIGH: 2개 (즉시 조치 필요)

• O MEDIUM: 1개 (1-3개월 내 조치)

• OK LOW: 1개 (6개월 내 조치)

• 카테고리 분포:

• 안전/환경: 3개

• 제품 인증: 1개

2.2 리스크 평가

• 전체 리스크 점수: 6.5/10

- 고위험 규제: 3개
- 즉시 조치 필요: 2개

3. 규제 목록 및 분류

3.1 제품 인증

3.1.1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

우선순위: MEDIUM **관할 기관**: 산업통상자원부 **적용 이유**: 리튬이온 배터리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.

주요 요구사항:

- 이차전지의 안전성 및 성능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- 재활용 및 자원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근거 출처:

• [[별첨]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. ...] 이차전지의 안전성 및 성능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3.2 안전/화경

3.2.1 🔴 대기환경보전법

우선순위: HIGH **관할 기관**: 환경부 **적용 이유**: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함.

주요 요구사항:

-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-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시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.

근거 출처:

• [법령 > 본문 >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]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용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 ·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3.2.2 🔴 환경정책기본법

우선순위: HIGH **관할 기관**: 환경부 **적용 이유**: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업체는 지역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, 대 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.

주요 요구사항:

- 지역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- 대기관리권역 내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.

근거 출처:

• [법령 > 인용조문 3단비교]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.

3.2.3 🔵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

우선순위: LOW **관할 기관**: 환경부 **적용 이유**: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재활용 및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.

주요 요구사항:

-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.
- 재자원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.

근거 출처:

• [<u>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-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...</u>] 폐리튬이온전지 음극활물질 재자원화 기술 실증화 연구.

4. 실행 체크리스트

4.1 🔴 대기환경보전법

- []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인
- 담당: 환경관리팀
- 마감: 2026-01-22

근거 출처:

- [법령 > 본문 >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]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- ・[] 배출시설 변경 신고 준비

- 담당: 시설관리팀
- 마감: 2026-01-22

근거 출처:

- [법령 > 본문 >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]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시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.
- []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록 관리
- 담당: 품질관리팀
- 마감: 2026-01-22

근거 출처:

• [법령 > 본문 >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]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
4.2 환경정책기본법

- ・[] 지역 환경기준 검토 및 준수 계획 수립
- 담당: 환경관리팀
- 마감: 2026-01-22

근거 출처:

- [법령 > 인용조문 3단비교]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.
- ・[] 대기질 개선 조치 실행
- 담당: 운영팀
- 마감: 2026-01-15

근거 출처:

- [법령 > 인용조문 3단비교]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.
- ・[] 배출허용기준 강화 검토
- 담당: 법무팀
- 마감: 2026-01-10

근거 출처:

• [법령 > 인용조문 3단비교]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.

• [] 모니터링 및 기록 유지 관리

• 담당: 품질관리팀

• 마감: 2026-01-30

근거 출처:

• [법령 > 인용조문 3단비교]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.

4.3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

・[] 이차전지 안전성 인증 신청

• 담당: 품질 관리 부서

• 마감: 2026-04-22

근거 출처:

- [[별첨]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. ...] 이차전지의 안전성 및 성능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- · [] 재활용 규정 준수 확인

• 담당: 환경 관리 부서

• 마감: 2026-04-22

근거 출처:

- [[별첨]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. ...] 재활용 및 자원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- [] 인증 및 규정 준수 관련 기록 보관

• 담당: 문서 관리 부서

마감: 2026-04-22

근거 출처:

• [[별첨]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. ...] 관련 문서 및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.

4.4 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

・[]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 방안 마련

• 담당: 환경부

• 마감: 2026-10-22

근거 출처:

- [<u>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...</u>] 폐리튬이온전지 음극활물질 재자원화 기술 실증화 연구.
- [] 재자원화 관련 법규 검토 및 준수 방안 수립
- 담당: 법무부
- 마감: 2026-10-22

근거 출처:

- [<u>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...</u>] 폐리튬이온전지 음극활물질 재자원화 기술 실증화 연구.
- [] 재활용 기술 개발 홍보 및 활용 방안 논의
- 담당: 홍보부
- 마감: 2026-10-22

근거 출처:

- [<u>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...</u>] 폐리튬이온전지 음극활물질 재자원화 기술 실증화 연구.
- [] 증빙 및 기록 확보
- 담당: 기획부
- 마감: 2026-10-22

근거 출처:

• [<u>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-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...</u>] 폐리튬이온전지 음극활물질 재자원화 기술 실증화 연구.

5. 실행 계획 및 타임라인

5.1 🛑 대기환경보전법

타임라인: 3개월 **시작 예정**: 즉시

주요 마일스톤:

• 1개월 차: 서류 준비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1-22)

• 2개월 차: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록 관리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1-22)

근거 출처:

• [법령 > 본문 >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]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용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 ·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5.2 환경정책기본법

타임라인: 3개월 **시작 예정**: 즉시

주요 마일스톤:

- 1개월 차: 배출허용기준 강화 검토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1-10)
- 2개월 차: 대기질 개선 조치 실행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1-15)
- 2개월 차: 지역 환경기준 검토 및 준수 계획 수립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1-22)
- 3개월 차: 모니터링 및 기록 유지 관리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1-30)

근거 출처:

• [법령 > 인용조문 3단비교]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.

5.3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

타임라인: 3개월 **시작 예정**: 즉시

주요 마일스톤:

- 1개월 차: 서류 준비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1-22)
- 2개월 차: 안전성 인증 신청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2-22)
- 2개월 차: 재활용 규정 준수 확인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2-22)
- 3개월 차: 기록 보관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3-22)

근거 출처:

• [[별첨]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. ...] 이차전지의 안전성 및 성능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5.4 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

타임라인: 4개월 **시작 예정**: 즉시

주요 마일스톤:

- 1개월 차: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 방안 마련 (완료 목표: 2026-01-22)
- 2개월 차: 재자원화 관련 법규 검토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2-22)
- 3개월 차: 재활용 기술 개발 홍보 방안 논의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3-22)
- 4개월 차: 증빙 및 기록 확보 완료 (완료 목표: 2026-04-22)

근거 출처:

• [<u>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-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...</u>] 폐리튬이온전지 음극활물질 재자원화 기술 실증화 연구.

6. 리스크 평가

6.1 전체 리스크 평가

전체 리스크 점수: 6.5/10

리스크 수준: 높음

6.2 고위험 규제 (상위 5개)

대기환경보전법

리스크 점수: 8.0/10

처벌 유형: 형사처벌

사업 영향: 영업정지 6개월

근거 출처:

• [법령 > 본문 >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]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용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 ·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환경정책기본법

리스크 점수: 8.0/10

처벌 유형: 형사처벌

사업 영향: 영업정지 6개월

근거 출처:

• [법령 > 인용조문 3단비교]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.

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

리스크 점수: 7.0/10

처벌 유형: 과태료

사업 영향: 영업정지 6개월

근거 출처:

• [[별첨]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. ...] 이차전지의 안전성 및 성능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7. 경영진 요약

핵심 인사이트

- 총 4개의 규제가 있으며, 이 중 2개는 HIGH 리스크로 분류됨.
- 리스크 점수는 6.5/10으로, 관리가 필요한 수준임.
- 고위험 규제는 3개로,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.

의사결정 포인트

- [] 고위험 규제에 대한 우선 순위 대응 방안 마련
- [] 리스크 점수 개선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점검
- [] 규제 준수 교육 프로그램 강화

권장 조치 (우선순위 순)

- 1. 즉시: 고위험 규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
- 2. 1개월 내: 리스크 점수 개선을 위한 내부 감사 실시

8. 다음 단계

- 1단계 (즉시): HIGH 우선순위 2개 규제 착수
- 2단계 (1주일 내): 담당 부서 및 책임자 지정
- **3단계 (2주일 내)**: 상세 실행 일정 확정 및 예산 승인
- 4단계 (1개월): 월 단위 진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
- **5단계 (분기별)**: 전문가 검토 및 보완

9. 근거 출처 모음

- [법령 > 본문 >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]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용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·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[법령 > 인용조문 3단비교]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.
- [[별첨]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. ...] 이차전지의 안전성 및 성능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- [<u>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...</u>] 폐리튬이온전지 음극활물질 재자원화 기술 실증화 연구.

면책 조항

본 보고서는 AI 기반 분석 도구로 생성된 참고 자료입니다. 실제 규제 준수 여부는 반드시 전문 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본 보고서 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